양양 스위트엠 디오션 입주자모집공고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양양스위트엠 디오션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의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양양스위트엠 디오션 홈페이지(www.양양스위트엠.com)을 통해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 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00~14:00, 견본주택 외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엔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체온계 측정, 손소독제 사용 등)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사용, 일회용 장갑 착용, 비접촉 체온계, 견본주택 내 음료 섭취 제한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때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사전 예약 방문 관람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전화(☎1533-4209)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한 전화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기를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02.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양양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양양군)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써 「주택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 공급 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 법규를 적용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2.)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원도 양양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 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KB 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 KEY)	네이버 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 민간 임대	O	O	O	O
APT 무순위 / 잔여 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 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 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방문 신청'에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청약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마이페이지)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양양스위트엠.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여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인지세법」제3조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 및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의해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주택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 사항 및 제한 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 제한 기간 없음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제3호)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56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 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삼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분양 서류 일체를 사업 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60%)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기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한 분양 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에게 공급대금 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 일정 및 납부 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양양스위트엠.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를 관람하고 청약 시 때에 따라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기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 세대 기준 전용 84타입이 설치되어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홍보물과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 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청약 자격별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기간	계약 체결
일 정	2022.09.13.(화)	2022.09.14.(수)	2022.09.15.(목)	2022.09.21.(수)	2022.09.23.(금) ~ 2022.10.01.(토)	2022.10.05.(수) ~ 2022.10.07.(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방문 AM 10:00 ~ PM 16: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주소 - 주소 :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2659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 견본주택 - 문의 : 1533-4209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때에만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할 수 있음.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형토지신탁 주요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영진하우징(주)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영진하우징(주)이고, (주)신태양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 준공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영진하우징(주) 및 시공사 (주)신태양건설이 연대하여 책임지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영진하우징(주)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진하우징(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1 - 사업방식 : 분양형 토지신탁사업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강원도 양양군 허가민원실-48451호(2022.9.1)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대한토지신탁(주)	영진하우징(주)	(주)신태양건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33층 (삼성동, 아셈타워)	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62, 302호(탄벌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1001호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34511-0373891	180111-0184662

■ 견본주택(분양홍보관) 및 현장 위치 안내

· 현장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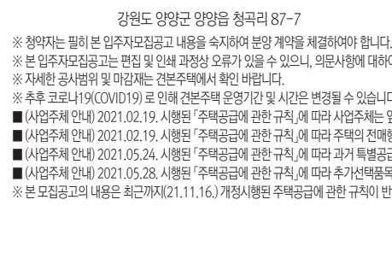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

문의 1533.4209

www.양양스위트엠.com

주요 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일
2022.09.13.(화)	2022.09.14.(수)	2022.09.15.(목)	2022.09.21.(수)

· 견본주택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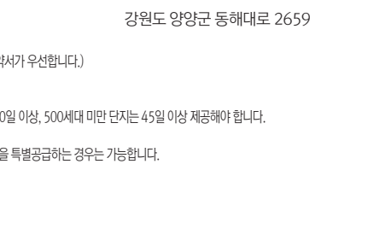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2659

※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안내)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 안내)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사업주체 안내) 2021.05.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공급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안내)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1.11.16.)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